

한국임상심리학회 운영세칙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본회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회원의 의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본회의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지닌다. 단 종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한다.2. 본회의 회원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학술 및 연수활동, 윤리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전문회원으로서 1년간 연수평점 10시간 이상(윤리교육 2시간 포함) 취득하지 못한 자는 주의 경고를 하며, 전문가 자격의 지속여부를 이사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3회의 주의경고를 받은 자는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내린다.3.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의 모든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4. 1년 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배부하지 않으며, 2년이상 회비가 체납되면 완납될 때까지 회원자격이 일시 정지된다.5. 전문회원, 정회원, 종신회원은 지회에 가입해야 한다.
제 3 조 (회원의 권리)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2. 본회의 회원은 본회가 발행하는 학회지, 웹진 및 기타 간행물을 배부 받을 수 있다.3. 전문회원과 종신회원은 피선거권을 가진다.4. 정회원, 전문회원, 종신회원은 선거권 및 기타 소정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 4 조 (회원의 입회)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입회비 및 연회비를 납부해야 한다.2. 입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ol style="list-style-type: none">1) 신입회원 인준 시 입회비 20,000원으로 한다.2) 정회원과 전문회원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가입하지만 준회원과 특별회원은 본회로 직접 가입할 수도 있다.3. 연회비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ol style="list-style-type: none">1) 본회는 연회비의 납부에 있어서 한국심리학회 운영세칙 중 회비관련 조항(제5조)을 준수한다.2) 본회 전문회원의 연회비는 60,000원으로 하고, 정회원의 연회비는 35,000원으로 하며,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3) 본회 특별회원의 연회비는 20,000원으로 하고, 준회원의 연회비는 20,000원으로 하며, 본회 혹은 한국심리학회를 통해 납부한다.4) 연회비의 납부시점은 매년 1월부터 익년 1월 전까지로 한다.
제 5 조	<ol style="list-style-type: none">1. 본 학회의 윤리규정 위반 혹은 학회(원)에 대한 위해 행동이 보고된

	<p>회원에 대해 상벌 및 윤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징계안을 의결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이사회는 상벌 및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안에 대해 대면 회의를 통해 인준한다. 3.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명 2) 자격(회원 및 임상심리전문가) 박탈 및 정지 3) 경고 4. 회장은 이사회가 인준한 징계안을 집행하고 상벌 및 윤리이사는 집행 결과를 해당 학회원 혹은 전체 학회원에게 공지할 수 있다. 5. 자격정지를 받은 회원은 자격을 회복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 경고를 받은 회원은 경고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2년 이내에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위원회 위원, 지회장, 연구회장에 임명 혹은 위촉될 수 없다.
<p>제 6 조 (임원의 선출과 임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는 회장이 대의원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2.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 받는다. 3. 회장, 대외부회장,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 자격관리 이사, 정책 및 제도이사, 제1편집이사, 제2편집이사, 상벌 및 윤리이사,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 재난 및 위기대응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수석부회장, 학술부회장, 총무이사, 홍보 및 정보이사, 학술이사, 재무이사, 교육이사, 특임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p>제 7 조 (임원의 임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칙에 규정된 각종 회의와 제반업무를 주재, 수행한다. 2. 수석부회장은 회장의 임무를 보좌한다. 3. 학술부회장은 학회의 대내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4. 대외부회장은 후원처 모색 및 업무협약 추진 등 학회의 대외활동 업무를 총괄한다. 5. 총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서의 작성과 관련된 업무 2)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학술회의 개최 및 진행에 필요한 업무 6. 홍보 및 정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웹진' 발행 관련 업무 2) 학회활동에 대한 홍보 및 섭외 업무 3) 홈페이지 관련 업무 4) 학회 정보서비스 관련 업무 7. 학술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반 학술활동 관련 업무 2) 정기 학술대회의 프로그램 기획 8. 교육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공동교육 프로그램 기획

- 2) 전문회원의 보수교육 및 연수평점 관련 업무
 - 3) 지회 및 연구회의 활동 관련 업무
 - 4) 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사례발표의 기획 및 집행
9.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 등록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
 - 2) 임상심리전문가의 자격요건에 필요한 수련내용의 규정
 -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의 평가
 - 4) 임상심리전문가 수련과정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 및 실사
 - 5)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생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의 인준 및 평가
10. 정신건강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관련된 대외 업무
 - 2) 정신건강복지법에 규정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 운영에 대한 관리
11. 자격관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 2)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학습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 3) 기타 외부기관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하는 각종 시험과 평가의 시행에 관한 업무
 - 4) 기타 자격시험에 관한 계획수립 및 정책 발의
12. 정책 및 제도 이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 정신건강복지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발, 제안 등의 관련 업무
 - 2) 정신건강복지 및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과 제도 관련 대외 업무
13. 제 1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본회에서 발행하는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4. 제 2 편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본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의 편집, 발간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5. 상벌 및 윤리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회원의 윤리 및 각종 포상에 관한 사항
 - 2) 회원의 징계에 관해 결정된 사항의 집행
16.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건강보험에 관련된 임상심리학적 행위항목과 수가 관련 업무
 - 2) 심리검사의 적정 사용과 관련된 업무
17. 재난 및 위기대응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재난, 자살, 청년실업, 독거 외 실제 위기사항에서의 대처 관련 업무

	<p>2) 국가정책 및 제도 제안 관련 업무</p> <p>18. 재무이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회원의 입회 및 유지관련 업무 2) 금전출납 사무 및 재무 관련 업무 <p>19. 특임이사는 학회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장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 한다.</p>
<p>제 8 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p>	<p>1. 이사는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5~1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이사가 된다(단, 인권 및 회원권익위원회의 위원장은 수석부회장이 된다).</p> <p>2. 각 위원회의 당연직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위원회는 학술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포함 2) 교육위원회는 학술부회장,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3)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위원회는 교육이사, 정신건강이사, 자격관리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4) 정신건강위원회는 홍보 및 정보이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5) 자격관리위원회는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 교육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6) 상벌 및 윤리위원회는 심리검사 및 보험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7) 인권 및 회원권익위원회는 상벌 및 윤리이사, 자격관리이사, 임상심리전문가 수련이사, 정신건강이사를 당연직으로 포함 <p>3. 위원의 임기는 해당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단 각 이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되는 타 위원회에서의 임기는 각 이사의 재임기간으로 한다.</p>
<p>제 9 조 (대외 수임)</p>	<p>대외 수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임상심리전문가 자격심사위원장, 자격심사위원의 수임사항 2) 기타 한국심리학회 수임사항 3) 기타 관련단체 수임사항
<p>제 10 조 (총회의 개최)</p>	<p>연 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며 정기총회의 개최시기는 이사회에서 결정 한다.</p>
<p>제 11 조 (지회의 설립 및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회는 각 지역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종 학술활동을 촉진하고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수련생을 효율적으로 교육함으로써 임상심리학의 발전과 저변확대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2. 지회는 본회의 목적과 부합되게 구성하고 본회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3. 지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4. 지회장은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소속 회원들에게 별도의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5. 지회장은 지회의 운영과 각종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본회에 재정

	<p>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재정 지원 요청 시에는 서면으로 사업 계획 및 예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 여부와 금액은 본회의 재무이사가 검토하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집행한다.</p>
제 12 조 (연구회의 설립과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연구회는 임상심리학 분야의 학술 및 연구 활동의 발전과 회원간의 활발한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지닌다. 2. 연구회 설립은 해당분야의 임상심리전문가 5인 이상을 포함한 본회 회원 20인 이상(준회원은 1/2명 회원으로 간주한다)이 발의하여 서면으로 회장에게 신청한다. 연구회의 설립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공식 명칭과 회칙, 주요 활동내용, 회원의 명단 등이다. 3. 연구회의 설립 여부 및 활동내용은 기존하는 연구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결정 한다. 4. 연구회는 본회의 목적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칙을 제정하여 이사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연구회의 회칙을 개정할 경우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단, 연구회의 회칙을 제외한 내부 규정 및 세칙은 본회의 인준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절차에 따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다. 5. 연구회는 수련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임상심리전문가 및 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전문영역 수련 커리큘럼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연구회는 연 2회 이상의 사례발표회를 시행해야 하며 그 참석 인원과 발표내용을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6. 연구회는 소속 회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한해 본회에 재정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본회에서 지원 받은 재정의 사용에 관해 본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7. 연구회를 해체할 때에는 본회에 이를 즉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 13 조 (사무국의 운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회의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 14 조 (재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와 연회비, 각종 수익금, 보조금 및 기타 찬조금으로 충당한다. 2. 본회의 회계 및 금전 지출은 회장과 재무이사의 결재를 거쳐 집행 한다.
제 15 조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	<p>본회 회칙 4조 4항에 명시되어 있는 임상심리전문가 자격규정에 관한 사항과 그와 관련된 자격시험 및 수련과정은 별도의 규정과 시행세칙에 따른다.</p>
부 칙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영세칙의 변경은 회장, 또는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대의원회에 제안하며, 대의원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는 즉시 발효한다. 2. 본 운영세칙은 94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본 운영세칙은 9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4. 본 운영세칙은 97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5. 본 운영세칙은 98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6-1)항, 6-4)항의 개정 내용은 본 회의 회칙개정과 한국심리학회 이사회의 인준이 완료된 날부터 정식으로 효력이 인정된다.
6. 본 운영세칙은 99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7. 본 운영세칙은 200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8. 본 운영세칙은 2003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9. 본 운영세칙은 2004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10. 본 운영세칙은 2005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1. 본 운영세칙은 2005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12.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13. 본 운영세칙은 2006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14. 본 운영세칙은 2007년 04월 09일부터 시행한다.
15. 본 운영세칙은 2008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16. 본 운영세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7. 본 운영세칙은 2011년 8월 03일부터 시행한다.
18. 본 운영세칙은 2013년 0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19. 본 운영세칙은 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0. 본 운영세칙은 2014년 10월 07일부터 시행한다.
21. 본 운영세칙은 2015년 07월 09일부터 시행한다.
22. 본 운영세칙은 2015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23. 본 운영세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4. 본 운영세칙은 2017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5. 본 운영세칙은 2017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26. 본 운영세칙은 2017년 1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27. 본 운영세칙은 2018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28. 본 운영세칙은 2019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29. 본 운영세칙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0. 본 운영세칙은 202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31. 본 운영세칙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2. 본 운영세칙은 2024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